대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173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진성준ㆍ허 영ㆍ박해철

김주영 • 강선우 • 양문석

위성곤 · 정을호 · 정태호

임광현 · 문진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사전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댐건설 사업의 필요성, 댐 외의 대안 여부 및 해당 대안의 실행가능 성, 댐 건설대상 지역의 수용가능성 등 댐건설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하기 위한 기구로, 협의회의 위원은 공무원과 수자원·하천 등의 분야 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됨.

협의회는 댐건설 계획의 필요성・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댐 건설의 추진 여부에 관한 권고안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게 됨. 그러므로 협의회 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검토협의회의 공무원 외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4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4항에 따라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u>본다.</u>